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5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방안제시



강북구의회 박문수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의원이 지난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에 우리구 외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8월13일 우리구의 총 210개 조례 중 124개 조례, 329개 조항을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구 집행부에서

는 통보된 정비과제의 수용 여부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무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먼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전담직원 1~2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정비방법에 있어 정비대상 개별 조례별로 따로따로 개정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된다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정비대상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한번에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향후 정비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정비해야

박 문 수 의원
(새정치/미아동, 송중동, 번3동)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문수 의원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관련』 해발언에 나섰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1월에 강북구 외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8월 13일 강북구의 210개 조례 중 124개 조례, 329개 조항을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 집행부에서는 통보된 정비과제의 수용 여부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무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되지 않는 등 신속한



▲ 박문수 의원

정비가 필요한 14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금년 8월 임시회에서 개정대상 조례의 내용을 일괄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강북구에서도 2대 의회와 5대 의회 두 차례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224개의 조례를 폐지, 개정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움이 되도록 한 바 있다.

현재 강북구 누리집에 입법예고 중인 몇 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미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박문수 의원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조례는 구정의 전반사항은 물론 주민생활과도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전담직원 1~2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정비방법에 있어 정비대상 개별 조례별로 따로따로 개정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된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정비대상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한번에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기자)

박문수 의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관련 제언 발언

신속한 정비 위한 전담직원 배치와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주장

박문수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 193회 강북구 임시회에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과 관련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치법규를 검토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된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 1월에는 강북구 외 54개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8월 13일 강북구의 210개 조례 중 124개 조례, 329개 조항을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로 선정해 통보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 강북구 집행부에서는 통보된 정비과제의 수용 여부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무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 초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되지 않는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146개의 서울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금년 8월 임시회에서 개정대상 조례의 내용을 일괄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면서 "강북구에서

도 2대 의회와 5대 의회 두 차례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224개의 조례를 폐지, 개정 등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누리집에 입법예고 중인 몇 개의 조례안 중에는 이미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추진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문수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방안 전문.

첫째, 조례는 구정의 전반사항은 물론 구민생활과도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한 정비가 중요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전



박문수 의원이 '자치법규 자율정비안'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담직원 1-2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안 정비방법에 있어 정비대상 개별 조례 별로 따로따로 개정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정비대상 조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하여 한 번에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